www.me.go.kr

친환경에너지타운 업무 매뉴얼

201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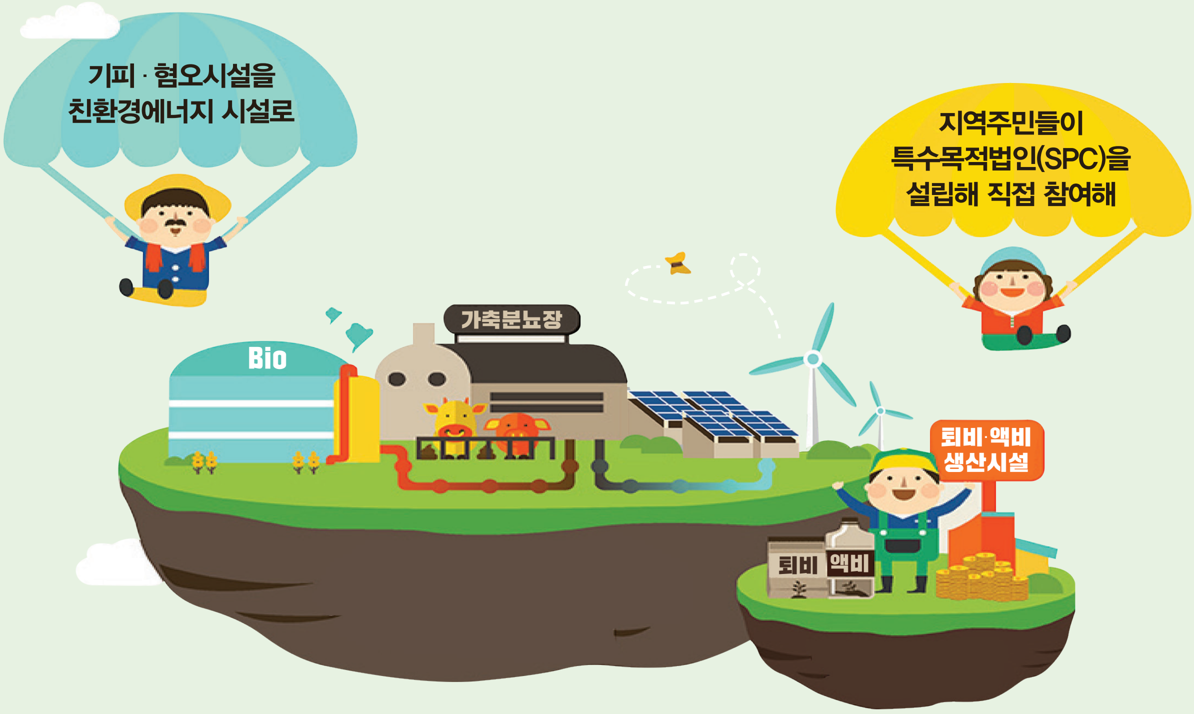

환경부

목 차

Ⅰ. 총 칙 ………………………………………………………… 1
1. 목 적 ………………………………………………………… 1
2. 개 념 ………………………………………………………… 1
3. 적용범위 ……………………………………………………… 2
4. 사업유형 ……………………………………………………… 2
5. 추진체계 ……………………………………………………… 3

Ⅱ. 추진 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 5
1. 사업추진 절차 ………………………………………………… 5
2. 주요 검토사항 ………………………………………………… 6
2-1. 사업계획 구상 ……………………………………………… 6
2-2. 사업계획 수립 ……………………………………………… 7
2-3. 응모절차 …………………………………………………… 10
2-4. 국고교부 신청 ……………………………………………… 13
2-5.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4
2-6. 설계 및 사업시행 ………………………………………… 16
2-7. 사업취소 대상 ……………………………………………… 17

Ⅲ. 기타 행정사항 ……………………………………………… 18

< 붙임 > ………………………………………………………… 19

붙임 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 21
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작성항목 및 평가기준 ……… 23
3.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양식 ………………………… 24
4. 부처별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가능 예산 ………………… 33
5.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법률 …………………… 34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 ……………………………… 36
7.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절차 ……………………… 37
8.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관련 절차 ………………………… 38
9. 신규 도시가스 배관공사 절차 ……………………………… 41
10.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 및 정관(예시) …………… 42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자치규약(예시) …………………… 54
12.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 조례(예시) ………………………… 67
13. 국내·외 우수사례 …………………………………………… 74

Ⅰ 총 칙

1. 목 적

□ 사업시행 주체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내용에 대한 검토·착안 사항을 제공하여,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다양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함.

2.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념

□ 기피·혐오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주도로 에너지 생산, 문화관광 등 수익 모델을 가미, 주민 수익 향상을 통해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 유인

○ (에너지 생산)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자원 회수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생산

○ (문화관광) 혐오시설 설치지역 주변 관광지, 문화유산 자원 등과 연계하여 수익사업 발굴로 새로운 수익창출

<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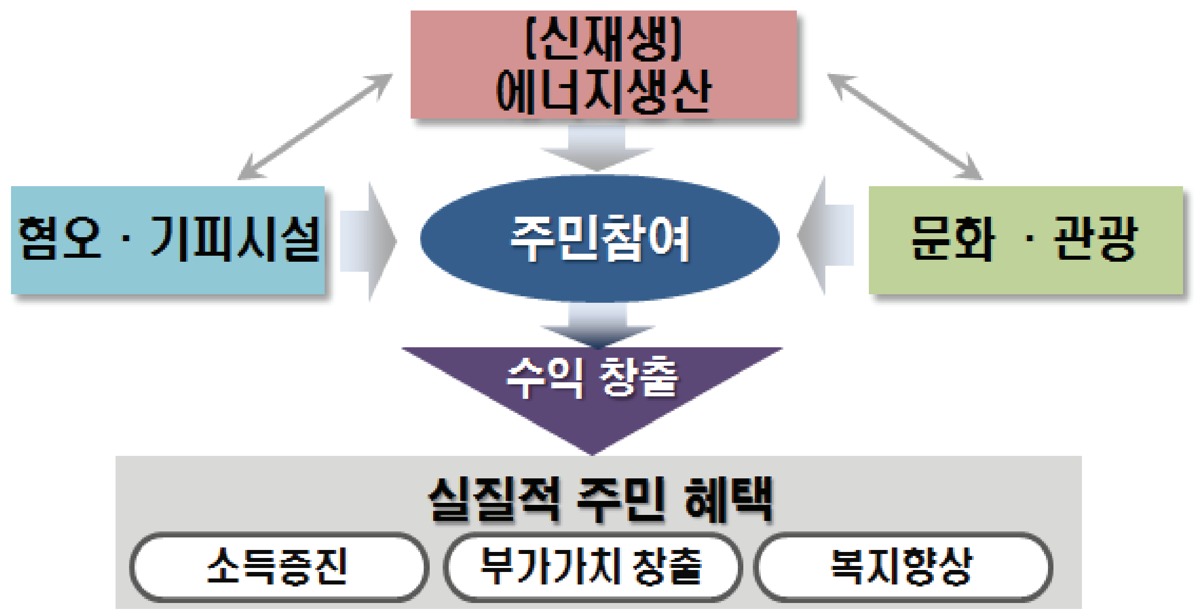

3.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현재 설치·운영 및 신규(계획중인 사업 포함) 기피·혐오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유기성에너지화시설, 가연성에너지화 시설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4. 사업유형

가. 대상시설별 사업유형

○ 폐기물처리시설形

○ 비선호·유휴시설形

○ 도시시설形

○ Off-grid(에너지 소외지역)形

나. 에너지원별 사업유형

○ 소각열形

○ 바이오가스形

○ 태양광形

○ 융·복합에너지形

다. 사업주체별 사업유형

○ (주민 주도형)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에너지원별 유형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

○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 단독 혹은 기업체 협력으로 국고+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에너지 설비 설치

○ (혼합형) 지자체주도형에 주민이 일정 부분 지분으로 참여

< 붙임1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참조 >

5.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 주관기관(환경부), 시행기관(지자체), 주민공동체·민간사업자, 주민협의체, 추진지원단, 지원부처·기관*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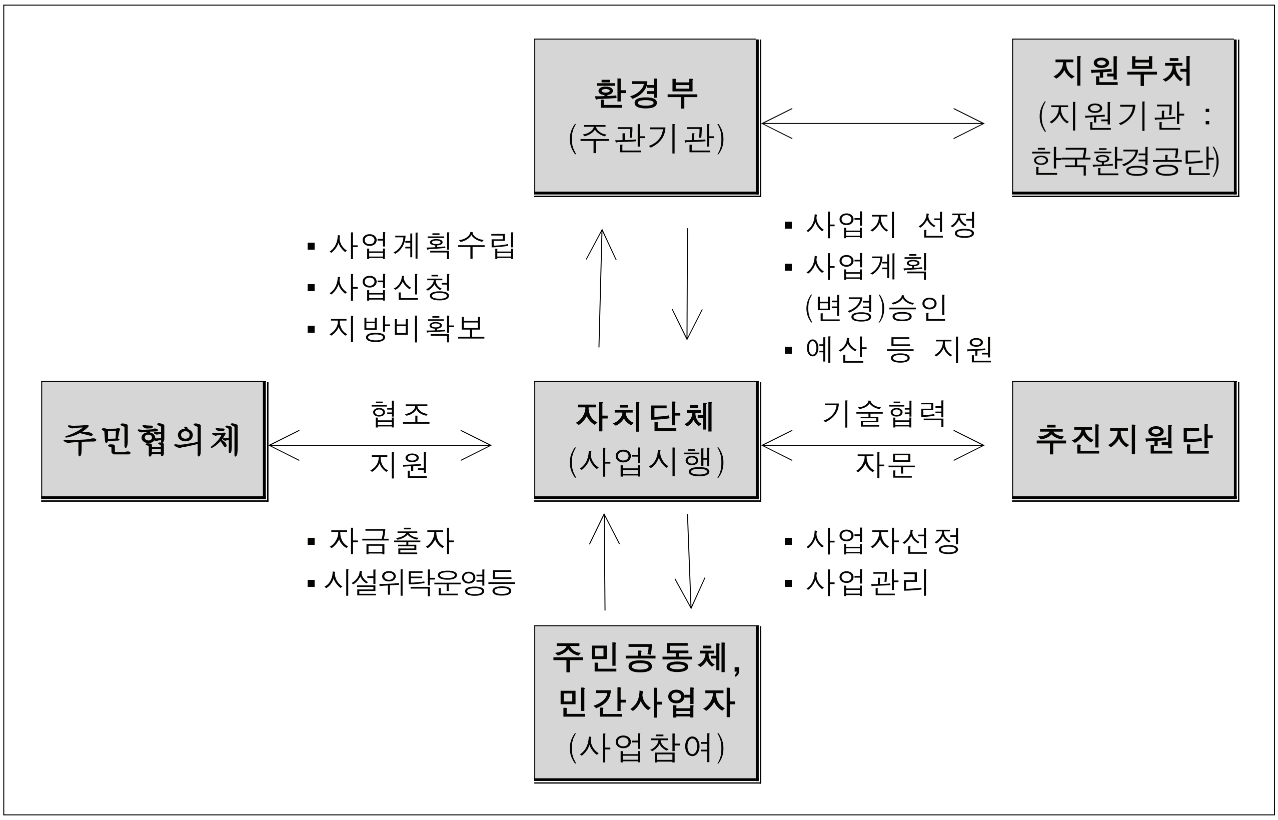

나. 기관별 역할

○ (환경부) 사업 주관부처로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지 선정, 사업계획 수립(승인), 예산지원, 행정적·제도적 지원 및 사업총괄 관리

○ (지자체) 사업모델 발굴 등 사업계획 수립, 재원조달, 인·허가,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주민참여 유도 등 사업시행 주체

- 광역지자체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

○ (주민협의체) 사업의 참여 주체로서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의견 개진, 마을규약 제정 등 사업 추진 협조·지원

- 주민공동체(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를 통하여 태양광 등 수익사업에 참여[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하여 주민기금 출자, 시설위탁 운영 등 직접 사업수행으로 수익 창출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자금조달, 기술 지원

○ (지원부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및 지자체 희망사업 발굴·지원 등

- 국무조정실이 총괄(컨트롤타워)하여 부처간 이견조정, 사업진행상황 점검 등 추진

* 관계부처 : 기재부, 행자부, 문화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미래부

○ (지원기관)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기술지원 및 컨설팅

Ⅱ 추진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1.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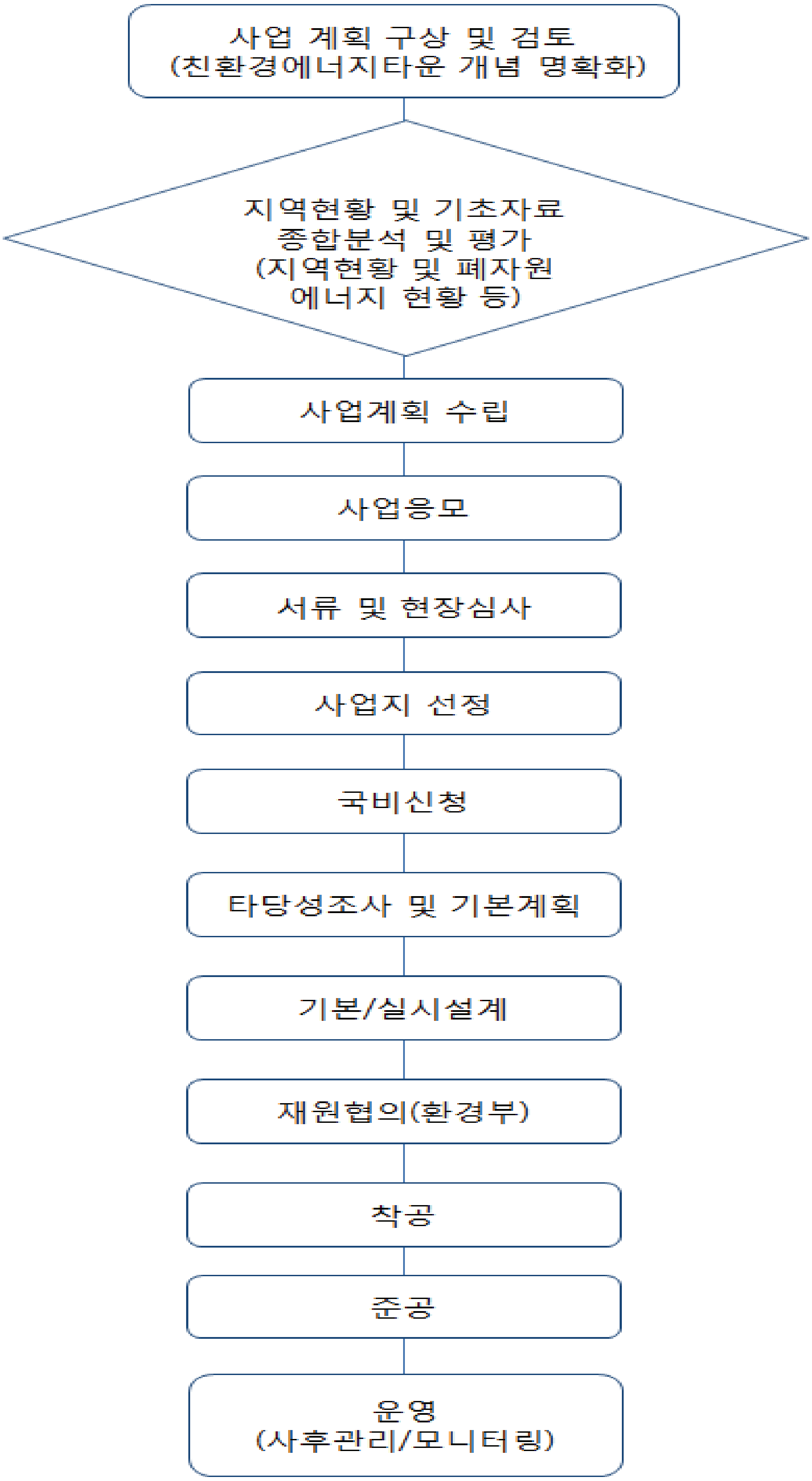

2. 주요 검토사항

2-1. 사업계획 구상

○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활용가능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목적 및 의의, 사업 대상지역 및 방법, 대상마을 현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검토

○ 사업목적 및 의의는 지자체 여건, 장기목표, 기존 지자체 종합계획 등과 부합여부를 검토

- 기피·혐오시설 님비현상 해소방안,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한 자원순환 사회형성 방안
-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통한 주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사업지역 선정 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대상지역, 시설규모 및 유형, 이용가능 폐자원에너지 종류, 사업방법 등을 검토.

- 기피·혐오시설이 위치한 시·군·구로서 동 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 주민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
- 기피·혐오시설로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비선호시설 및 유휴시설 포함) 등이 해당.
- 기피 · 혐오시설이 기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조기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이 사업선정에 유리.
- 사업유형으로는 폐자원에너지화형, 소각장형·매립지형·하폐수처리장 활용형, 혼합형을 환경부 주관 사업유형에 해당

  <붙임 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참조

○ 선정된 대상마을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부합성, 내용의 타당성, 사업 추진 용이성, 홍보효과 부분을 평가

-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규 사업발굴 필요

○ 대상마을 부합성은 기피·혐오시설 활용여부, 에너지생산·활용 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주민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

- 주민들의 참여의지, 그간의 노력 등을 검토.

○ 사업내용 타당성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의 구성, 시설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 추진체계, 향후 운영체계 등을 평가.

○ 사업추진 용이성은 부지확보의 용이성, 인허가 등 제도적 제약 여부, 재원 확보방안의 적정성, 주민 등 민간자금 조달 가능성, 시설입지로 인한 주민 수용여부 등을 평가.

- 특히, 주민들의 사업 동의여부 및 참여의지와 방법 등을 제시

○ 홍보효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 가능성과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포함한 대국민 인식 개선효과 등을 평가

○ 사업계획 구상 및 검토단계는 각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대상마을별 기반여건을 평가.

2-2. 사업계획 수립

○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검토단계에서 검토·평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현황과 과제파악, 대상 지역 및 폐자원에너지 선정, 기술선정 및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 및 시설운영계획 마련

-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사업 추진일정 계획수립 등의 일반적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 국가 및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계획.

가. 지역현황 및 과제 파악

○ 지리적,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과 폐자원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폐자원 처리·이용현황 등을 조사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농업계, 산림계, 폐기물계로 구분하고,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감안하여 이용 가능량을 파악.

- 폐자원에너지 발생량(부존량)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또는 추정.

※ 이용 가능량 = 미이용량 + 기존 이용량(처리량) 중 이용(처리)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양

○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입지환경·에너지(기후변화)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과제와 전망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역 및 폐자원에너지 선정

○ 폐자원에너지 원료 확보 여부 및 시설의 입지 가능성, 생산된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 여부, 이해관계자(주민, 주민협의체・농민단체 등)의 동의, 수집・운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역을 선정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악취발생 등 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등 대상지역의 사회·환경성에 대한 개선효과와 사업추진으로 인한 대상마을 환경개선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

다. 기술 선정 및 타당성 분석

○ 이용가능 폐자원에 따른 경제・환경・기술・사회성 등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폐자원에너지화 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

○ 부지비용, 설치비용, 운영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용과 반입처리비, 에너지 및 부산물 판매비용 등을 고려한 비용/편익 산정 후, 경제성을 평가하여 가장 최적의 기술을 선정

○ 악취발생, 폐수처리 등 2차 오염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성을 평가하여 해당 기술을 선정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특성상 악취 등으로 인한 대상마을 주민의 피해가 가중할 경우는 악취기술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재원마련 및 행정적 절차를 사전 추진.

○ 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과 해당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운영비 절감, 운영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 후, 가장 최적의 기술을 선정.

○ 대상마을 주민 고용창출, 대상마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민원을 잠식시킬 수 있는 해당기술을 우선 선정.

라. 재원조달 및 시설운영 계획 마련

○ 시설설치 비용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비, 매전수익 등 운영비 대비 편익분석 및 운영주체 선정 등 시설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분석

○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이용에 따른 바이오가스, 퇴·액비, 소각폐열, 매립가스 활용 등 자원순환성 향상 등을 분석

○ 지역 에너지 자립도 개선 및 CO_2 저감에 따른 지구온난화 개선 효과 등을 분석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사회적 효과 등을 분석

바. 사업 추진일정 계획 수립

○ 토지매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시설 설치 승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착공, 준공 등 추후 사업시행 시 필요한 주요 공정별 추진일정 등을 검토해 사업기간을 산정한 후, 사업 추진일정 계획을 수립

2-3. 응모 절차

가. 추진방식

○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개념 및 방향에 부합한 지역(지자체)을 사업지역으로 선정

나.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계획수립 통보(사업공모) : 1월 중순

- 년도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통보(환경부→지자체) 및 사업공모

○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 매년 1월 말

-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실시

○ 사업신청 : 매년 2월 셋째주

- (시・군・구) 사업계획서(붙임 3)를 작성, 시・도에 1차 제출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추천서(붙임4)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제출

* 사업우선 순위, 사업의 부합성 및 타당성,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 등 검토

○ 서면평가 : 매년 2월 말

- 민・관・학계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

  <붙임 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작성항목 및 평가기준> 참조

○ 현지심사 : 매년 3월 중순

- 서면평가결과 선정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하여 사업계획 청취 및 사업 대상지 현지 확인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등 확인
- 특히, 주민-심사위원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주민 참여 의지 확인

* 주민 갈등이 지속 지역, 주민의 사업 내용 인식 정도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지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최종 평가 및 선정 : 매년 3월 말

- 대상마을의 주민참여도,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평가지표 >

구 분	점 수	내 용
대상마을 부합성	40점	기피·혐오시설 활용 / 에너지생산·활용 가능성 / 수익창출 가능성 / 주민참여도
사업내용 타당성	30점	사업의 타당성 / 추가사업의 타당성/ 수익금 활용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용이성	20점	부지 및 자금 확보 가능성 / 주민 수용성
홍보효과	10점	사업모델 전국확산 가능성, 홍보효과

* 각 심사위원(최고, 최저점수를 제외)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을 내어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

○ 최종 사업계획 수립·제출

- 당해연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평가위원 심사 시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수립,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제출(4월 말까지)
-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환경부와 사전협의 후 변경승인 등 절차를 이행

다.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하여 환경부에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대상마을 부합성, 사업내용 타당성, 사업추진 용이성, 홍보효과 등 <붙임 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작성항목 및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 대상마을 부합성 작성 시에는 기피·혐오시설의 활용가능성, 에너지 생산·활용 가능성, 에너지 활용시설 및 관광자원으로 인한 수익창출 가능성, 대상마을 주민 참여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

- 지자체는 사업선정부지의 환경기초시설 현황·발생되는 폐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에너지 생산과 활용 추진방향에 대한 자료를 대상시설별로 작성

- 폐자원 및 신재생에너지와 인근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수익 모델 아이템을 선정 후 제출

○ 사업내용 타당성 작성 시에는 사업내용 구성, 시설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향후 운영체계의 적정성 및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결과는 발생되는 직·간접 수익금 활용의 적정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

○ 사업추진 용이성 작성 시에는 부지 및 자금확보 가능성과 사업입지로 인한 예상민원 및 주민수용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

○ 홍보효과 작성 시에는 사업모델의 범용성 및 전국 확산 가능성 등 대국민 인식 개선효과에 따른 홍보효과를 세밀하게 검토

2-4. 국고 보조 신청

가.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

나. 지원대상 및 규모

○ 대　　상 :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 총 사업비 : 52억원(국고 50%+지방비 50%)

○ 사업기간 : 3년

- 1년차 :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2~3년차 : 시설 설치 등 사업 시행

○ 지원규모 : 국고 2,600백만원(50%)

- 1년차 : 연구용역비 100백만원
- 2~2년차 : 총 2,500백만원(1,250백만원/년)

다. 국고교부 신청

○ (지자체) 국고교부 신청→광역지자체

-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정사업비, 사업비 내역, 재원 조달계획, 사업 효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고교부 신청

○ (광역지자체) 각 지자체의 국고교부신청을 종합하여 환경부에 국고교부 신청

- 당초 사업계획 반영 여부 및 예산의 적정성, 광역지자체 해당 역할 분담(광역지자체 부담분 반영) 등에 대한 검토

○ (환경부) 국고교부

- 각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지자체(기초, 광역)의 국고보조 매칭비율 준수여부 등 검토

2-5.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된 대상마을에 대하여는 대상마을 부합성과 사업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는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기본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별 인·허가를 고려한 사업 일정 제시,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운영 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비 산정, 소요사업비 및 사업수행방식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가. 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사업대상 마을·지자체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 사업대상 마을·지자체 현황(인구, 농가 재배품목 등)
- 사업대상 마을 에너지 소비현황 등
- 기초자료 조사(자연·산업환경 등)

○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기술현황 및 국내·외 유사시설 설치·운영 사례 조사

- 국내·외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설치·운영 사례 조사
- 해외 선진지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 현지조사 등

○ 사업대상 마을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조사
- 사업대상 마을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 등 기초자료 수집
- 사업대상 마을 및 인근 지역의 폐자원 이용 가능량 등 조사
- 사업대상 마을 인근 폐자원 에너지 공급시설 및 활용시설 현황 등

○ 폐자원 에너지 활용방안 검토
- 최종 생산물 및 부산물 등 효율적·경제적 활용방안 검토
- 효율적, 경제적,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된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설치 가능여부 및 위치 등 검토

○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 활용 검토
- 사업대상 마을 인근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 현황 등 조사
- 사업대상 지역의 기후조건 등 일반현황 등 조사
- 사업대상 마을 인근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 활용여부 검토 등

○ 상위 계획, 관련 법규 등 검토
- 사업 수혜주민 범위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및 근거 제시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 계획, 개발 계획 및 법규 검토
- 사업 관련 인·허가사항, 규제내용 및 인·허가 추진 절차 검토 등

○ 사업 추진관련 주민 설문조사 또는 의견수렴회 개최 계획

○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및 마을 인근 문화·관광 연계 주민소득 창출 방안
- 국내·외 유사시설 인근 주민소득 창출방안 조사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방안 및 소득창출 방안 검토

○ 지자체 특성별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 설치 및 문화·관광 연계사업 타당성 검토

○ 본 사업 관련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 본 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방안 검토

○ 사업추진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사업방식 비교 검토 및 사업추진 절차
- 재정적 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나. 기본계획 주요내용

○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기본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시설용량 등
- 처리시스템 구성 및 주요 설비·시설물 계획 등
-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 설치계획 등
- 기존시설 및 계획시설과의 연계처리 계획 등
- 악취 등 2차 오염물질 처리계획 등

○ 인·허가를 고려한 사업일정 제시

○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운영 관리계획 및 유지관리비 산정

- 폐자원 에너지화 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과적 운영관리 계획

○ 소요사업비 및 사업수행방식 검토

- 세부사업 아이템별 소요사업비 검토
-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 에너지화 활용시설의 사업 추진계획 등

2-6. 설계 및 사업시행

○ 사업선정 후 주요 사업별 추진절차와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시행

○ 사업 준공 후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및 유지관리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된 법률 중 에너지 관련 법제, 녹색국토 및 건물 관련 법제, 자원순환 관련 법제 등을 검토

○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적용 분야별, 사업추진 단위별, 부처별 규정된 개별법이 다양하게 존재

○ 친환경에너지타운 적용대상에 따라 설치, 운영·관리 적용 법률 검토

○ 타당성조사 및 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 입찰 이전에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실시.

- 환경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 공고되었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당해연도 국고 보조사업비 집행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 조기집행 방안 강구.

- 집행률 저조 또는 전년도 이월예산 1/4분기 내 미집행 시, 당해연도 예산조정 및 다음연도 예산 미반영 또는 최소반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따른 사업추진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사업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업내용 변경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예상이 불가능한 항목 중 시설설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내용 변경은 환경부와 사전협의 완료 후, 추진 및 준공 전년도 말까지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2-7. 사업취소 대상

○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을 경우

- 혐오기피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향상 효과가 미미하거나 주요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 주요 사업계획 변경,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 곤란하거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 지방비 확보 등 소요사업비 조달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목적, 추진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Ⅲ 기타 행정사항

□ 본 매뉴얼은 사업시행 주체에게 세부적인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본 매뉴얼은 작성된 현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에 대하여 소개한 것으로서 추후 법적·제도적·사회적 상황 및 관계부처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행 주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계획, 기술 자문, 사업 진단 및 조사·평가 등을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붙임

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작성항목 및 평가기준
3.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양식
4. 부처별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가능 예산
5.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법률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
7.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절차
8.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관련 절차
9. 신규 도시가스 배관공사 절차
10.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 및 정관(예시)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자치규약(예시)
12.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 조례(예시)
13. 국내·외 우수사례

<붙임 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 추진유형 [예시]

유 형	주요 사업내용
폐자원 에너지화型	·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소화 후,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인근마을에 공급하거나 도시가스사에 판매 또는 전기를 생산 판매하거나 마을 내 난방, 전기 등 에너지비용 절감 및 마을 공동수익 창출 ·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제조 판매하거나·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전기·열을 생산 활용
매립지型	· 태양열, 풍력, 매립지 내 지열, 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전기·열을 마을 내 이용 또는 판매
소각장型	·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 스팀·온수·전기를 이용·판매 · 소각장 굴뚝을 활용한 전망타워(레스토랑 등) 설치로 관광객 유치
하폐수처리장 활용型	· 하폐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활용, 열·전기생산 · 하폐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폐열을 활용 · 하폐수열, 소수력, 태양광을 활용하여 발생된 전기·열을 이용·판매
혼합型	· 폐자원 에너지화型, 매립지型, 소각장型, 하폐수처리장 활용型 등을 집적화하여 생산된 스팀, 온수, 열, 전기를 이용·판매

□ 주요 사업 및 시설 [예시]

o 친환경 에너지타운 유형별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문화 관광사업 등을 가미**, 주민복지 및 소득향상

- 기피시설 여유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역특색과 연계한 문화관광시설 개발
- 마을환경개선, 마을회관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 o 음식물류, 가축분뇨 등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시설
- o 발전기, 보일러, 가스정제시설, 전력저장시설(ESS)
- o 소화조 탈리액, 슬러지 등 액비・퇴비 자원화시설
- o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공급시설(관로)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 o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수력발전, 지열 등) 생산시설
- o 태양광 주택, 태양광 가로등 등 에너지절약・효율화시설 등

☐ **주민소득・편의・복지시설**

- o 폐자원을 활용한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
- o 에너지자립형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편의시설(체육시설, 경로당, 목욕탕, 휴게시설 등)
- o 악취, 경관 등 기피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 o 마을하수도, 상수도 등 환경기반시설 등

☐ **기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문화관광 연계개발사업**

- o 경관작물 식재, 생태체험 관광단지 등

유형 구분		추가 에너지	적용가능 대표사례(예시)
시설	기본에너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열	태양광, 스팀발전	-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시설 - 일본 마이시마 소각시설
	바이오가스	태양광, 가스발전, 소수력	- 경남 거창군 양기·음기마을 - 경북 봉화군 서벽마을 - 오스트리아 귀싱, 뮤레크 - 독일 윤데, 마우엔하임 - 일본 쿠즈마키
비선호·유휴시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 경남 산청군 민들레공동체 - 스웨덴 말뫼 Bo01 - 일본 기타큐슈
도시시설	융·복합에너지	태양광·열,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 - 아랍에밀레이트 마스터르 - 덴마크 코펜하겐
Off-grid 시설	융·복합에너지	태양광·열,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 제주 가파도 - 덴마크 삼소섬, 롤란섬

<붙임 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작성항목 및 평가기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작성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사항	배점	평가
총계			**100**	
대상마을 부합성 (40점)	**소계**		**40**	
	기피·혐오시설 활용	· 환경기초시설 등 기피 · 혐오시설 활용여부	10	
	에너지 생산·활용 가능성	· 에너지(전기, 가스, 열 등) 생산 가능성 · 폐자원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 가능성 · 생산된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15	
	수익 창출 가능성	· 수익·편익 창출 가능성 · 마을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8	
	주민 참여 가능성	· 주민협의체(계획) 및 주민협동조합(계획) 결성 여부 · 주민참여도	7	
사업내용 타당성 (30점)	**소계**		**30**	
	사업의 타당성	· 사업 내용 구성, 시설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 및 향후 운영체계의 적정성	20	
	수익금 활용의 적정성	· 사업의 결과로 발생되는 직·간접 수익의 참여주체 간 배분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사업추진 용이성 (20점)	**소계**		**20**	
	부지 및 자금 확보 가능성	· 부지확보의 용이성 · 인허가 등 제도적 제약 여부 · 재원 확보방안(계획)의 적정성 · 주민 등 민간 자금 조달 가능성	10	
	주민 수용성	· 시설입지로 인한 예상 민원, 주민 수용 여부	10	
홍보 효과 (10점)	**소계**		**10**	
	확산가능성	· 사업모델의 범용성 및 전국확산 가능성	**5**	
	홍보효과	·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미지 제고 등 기대되는 대국민 인식 개선 효과	5	

<붙임 3>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양식

○○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계획서

2015. 2.

※ **유의사항**
- 작성분량 : A4, 40페이지 이내(간략하게 작성)
- 작성요령 : 붙임의 사업계획서양식에 기재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사진 등 포함) 양식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작성 가능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 작성・제출(출력물 10부, 파일 제출)
- 글씨체 : 본문 휴먼명조 14~15 point, 참고 : 중고딕 13point, 줄간격 160

○ ○ (시・군・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현황	**주 소**			
	마을인구	명	**마을가구수**	가구
2. 사업유형	☐ 폐자원에너지화형 ☐ 매립지형 ☐ 소각장형 ☐혼합형 ☐기타			
3. 친환경 에너지설비 개요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대상폐자원	시설명	규모(톤/일)	생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	시설명	규모(톤/일)	생산에너지

4.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주민출자**	**기타**
계					
기본사업					
기존 정부 예산사업					
5. 사업기간					

6. 지자체 담당자				
	부 서		TEL.	①
				②
				③
	직 위	① 과장	Fax.	①
		② 계장		②
		③ 담당		③
	성 명	①	E-mail	①
		②		②
		③		③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2월 일

기초자치단체장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계획 요약서

□ 대상지역 개요 및 특성

ㅇ 위치 :	대상지역 사진
ㅇ 면적 :	
ㅇ 인구 :	
ㅇ 현황 : ㅇ 특징 :	

□ 주요 사업 내용 및 주민수익 모델

구 분	주요 사업	소요예산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개요] ㅇ ㅇ [주민수익모델] ㅇ ㅇ	00억원 (국비 00, 지방비ㅇㅇ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요] ㅇ ㅇ [주민수익모델] ㅇ ㅇ	
주민 편의시설	ㅇ ㅇ	
기타 관광 사업등	ㅇ	

□ 소요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

○

○

사업내용	소요예산(백만원)					재원확보
	계	국고	지방비	융자금	기타	
계						
o						
o						

□ 사업추진체계 및 주민참여 방안

○

○

□ 주민수익 창출 및 수익금 활용

○

○

□ 사업추진 일정

○

○

○○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계획

* (제목 예시) 홍천 소매곡리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

1. 지역 개요 및 특성

<table>
<tr><td>ㅇ 위 치 : (oo마을)</td><td rowspan="4"><대상지역 사진1></td></tr>
<tr><td>ㅇ 면 적 : 천㎡</td></tr>
<tr><td>ㅇ 시설현황
- 가축분뇨처리시설 120/일(운영중)
-
-</td></tr>
<tr><td>ㅇ 인구 : ○○명(○○가구)</td></tr>
<tr><td>ㅇ 현황 : 대상 부지, 시설의 현재 현황을 기재

ㅇ 특성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수 있도록 대상부지, 계획사업의 특성을 기재

☞ 인근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기재</td><td><대상지역 사진2></td></tr>
</table>

1) 면적은 대상시설을 포함한 마을면적을 기재
2) 시설현황은 사업대상지역의 환경기초시설(기피, 혐오시설) 설치・운영현황을 기재
3) 인구는 신청일 현재 대상마을의 인구와 가구수를 기재
4) 지역 개요 및 특성(대상시설・마을사진)에 대한 세부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

2. 사업 개요 총괄 : ○○형

※ 붙임5의 사업추진 유형 예시에 따라 주요유형을 기재

(폐자원에너지화형, 매립지형, 소각장형, 혼합형 등)

구 분	사업내용(예시)	소요예산 (억원)	1)재원확보 방안
폐기물 에너지화	가축분뇨,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100톤/일)	00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구분)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예산(환경부) 활용
2)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340kW)	10 (융자금9, 주민부담1)	산업부 융자금활용
주민편의 시설	마을회관 개량	2억원 (국고1,지방비1)	기본사업비
문화관광			

1) 재원 확보방안은 기본사업비[친환경 에너지타운 예산(총 52억원)]와 기존 정부 예산사업비, 기타(융자금, 주민기금, 민간투자 등)로 구분 기재
 - 기존 정부예산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명과 지원사업 예산명을 간략히 기재

2)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

3. 사업별 세부내역

가. 폐기물에너지화

※ 폐기물에너지화(자원화 포함, 이하동일) 사업에 대하여 작성(단위 세부사업별 또는 통합) 하되, 세부자료의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

□ 사업필요성(목적)

※ 에너지화(자원화 포함)대상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 에너지화 필요성, 생산에너지(전기, 가스, 열 등)의 활용가능성, 사업지역 주변여건 등을 토대로 단위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적을 기재

□ 사업내용

※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부지면적/ 시설규모/ 주요시설/ 처리공정, 시설설치 및 운영주체 등)을 기재

※ **대상폐자원 확보방안**(수거・운반포함), **에너지화 방안, 에너지**(전기, 가스, 열, 퇴비등) **활용** 및 부산물 처리방안 등을 기재

※ 에너지화의 **사업규모**(시설규모 등)의 선정하고 **산출근거**를 기재

- 대상폐자원 발생・처리실태, 안정적인 폐자원확보 가능성, 에너지생산 가능성, 생산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등 고려하여 규모선정

※ 에너지화시설 **설치 및 설치후 운영계획**(운영주체, 운영조직 등)을 기재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단위사업별 소요예산과 산출근거를 기재

※ 재원분담방안(국고, 지방비 등)과 재원 확보방안(기본사업비, 기존 정부예산사업비, 기타)을 세부적으로 기재("사업개요"의 비고 참조)

※ 소요예산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기재

□ 사업효과

※ 단위사업의 시설설치비용, 운영비용, 생산 에너지 판매비용 등 경제성을 분석하여 기재

※ 주민 직・간접이익 창출, 일자리창출 등 단위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재

나. 신재생에너지

□

다. 주민편의시설

□

라. 문화・관광시설 등

□

※ 나. 신재생에너지~라. 문화관광시설 항목은 "가. 폐기물에너지화" 작성 요령과 같이 사업필요성(목적)/ 사업내용/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사업효과 순으로 작성하되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 또는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시행 체계 및 준공후 시설 운영관리 체계(주체, 역할 등)를 기재

- 사업시행주체는 지자체가 되도록 계획하되 지자체 이외에 주민, 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을 기재

* 주민수익 창출사업에 주민,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 협동조합 등을 구성,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강구

※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기술지원, 컨설팅 자문을 위한 “추진지원단” 구성・운영계획을 기재

5. 주민 수익창출 및 수익금 활용방안

※ 주민수익창출 사업에 주민참여시 연간 예상되는 주민이익을 산출하여 기재

* 직접이익 :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 출자(주주로 참여)하여 직접이익 창출시 이익

* 간접이익 : 사업시행에 따라 주민이 얻는 간접적 혜택

※ 발생되는 수익금의 참여주체별 배분방안과 활용방안을 기재

6. 사업 추진일정

※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추진일정을 표로 제시하되 단위사업별 추진일정(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시운전, 준공 등)을 기재

7. 기대효과

※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총괄적으로 기재

[참고자료]

※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과의 부합성, 대상사업지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 참여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1. 사업대상지역 마을 현황

o 사업대상지역 위치도

※ 1/5,000~1/25,000 축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

o 사업대상지역의 마을 현황 및 특징

※ 대상마을의 지리적 특성, 인구, 마을공동체 현황, 농산물·축산업 현황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연관된 특이사항 등을 기재

2. 기피·혐오시설, 환경기초시설 현황

※ 기피·혐오시설 현황과 이로 인한 악취 등 주민피해, 민원 현황을 기재

※ 기존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을 운영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경우 환경기초시설 운영·추진현황을 기재

3. 사업대상부지 현황

※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사업대상 부지 현황, 부지확보의 용이성, 인허가 등 제도적 제약여부 기재

4. 지역주민 참여 및 호응도

o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기금 조성여부

※ 협의체명, 구성내역, 구성일시, 역할 및 임무 등 기재

※ 주민기금 조성액,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에 투자여부 등 기재

o 주민 반대민원 발생 가능성, 주민 참여·호응도

5. 문화·관광시설 계획시 주변 **관광자원 현황 및 연계가능성**

6. 사업추진시 예상 문제점 및 해소 방안

7. 기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계획 설명자료

※ 폐자원발생 및 처리실태, 폐자원 확보방안, 에너지화 방안, 에너지(전기, 가스, 열, 퇴비 등) 활용 및 부산물 처리방안 등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기재

<붙임 4> 부처별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가능 예산

구 분	사업명	지원방안
환경부(8)	소각시설 설치	지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지원
	매립시설 설치	지자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지원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음식물, 음폐수 등에서 메탄회수 시설 설치 지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여 고형연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
	고형연료제품 전용 보일러 설치	고형연료(SRF) 보일러 시설 설치 지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환경시설 내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	하수슬러지 소화조 설치 및 개량 지원
산업부(3)	신재생에너지 설비 금융지원(융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융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ESCO)	에너지 효율개선 시설 설치 시 융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태양광, 풍력 등 2가지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투입지역 맞춤형 통합 지원
농식품부(7)	경관보전직불제	경관작물(코스모스 등) 2ha 이상, 준경관작물(청보리, 밀)을 경관형성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100~170만원/ha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퇴·액비,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마을 기반시설, 마을경관 정비, 농촌주택 에너지효율화 개보수
	일반 농·산·어촌 개발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농어업시설에 지열 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등 설치 지원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농어촌 주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정비 지원
문체부(4)	산업관광 육성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재로 산업현장, 역사, 창업 스토리 등을 관광상품화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폐산업시설 등 지역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 지원
	생활 체육공원 조성	녹지공간 내 각종 체육시설 설치 지원
	국민 체육센터 건립 지원	지역별 맞춤형 체육시설 모델 개발,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에 확충 지원
국토부(1)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도시활력 증진지역(김해, 천안, 참원, 포함 등) 기초생활기본 확충사업(도로개설, 생활인프라 구축), 주거지 개량사업 등

<붙임 5>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 법률

구분	주 요 내 용			계획
	법률	조례	규칙	
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 국토기본법 · 에너지법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일반법	· 대기환경보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각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해당지역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건축계획 · 도시개발편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계획
촉진법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별 법령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 계획수립지침(국토부 훈령) · 에너지, 건물, 교통, 물 관리, 자원순환 관련 법제			· 분야별로 연계된 각종 계획

구분	주 요 내 용	자원 및 환경관련
전국	· 국토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 · 하천법 · 수도법 · 하수도법 · 토양지하수법 · 에너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광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천법
시도	· 국토기본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소하천정비법
지역구역 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주택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환경영향평가법 · 하수도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전기사업법 · 폐기물관리법
녹색특화법령 및 사업자지침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 계획수립 지침(국토부 훈령) · 환경영향평가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붙임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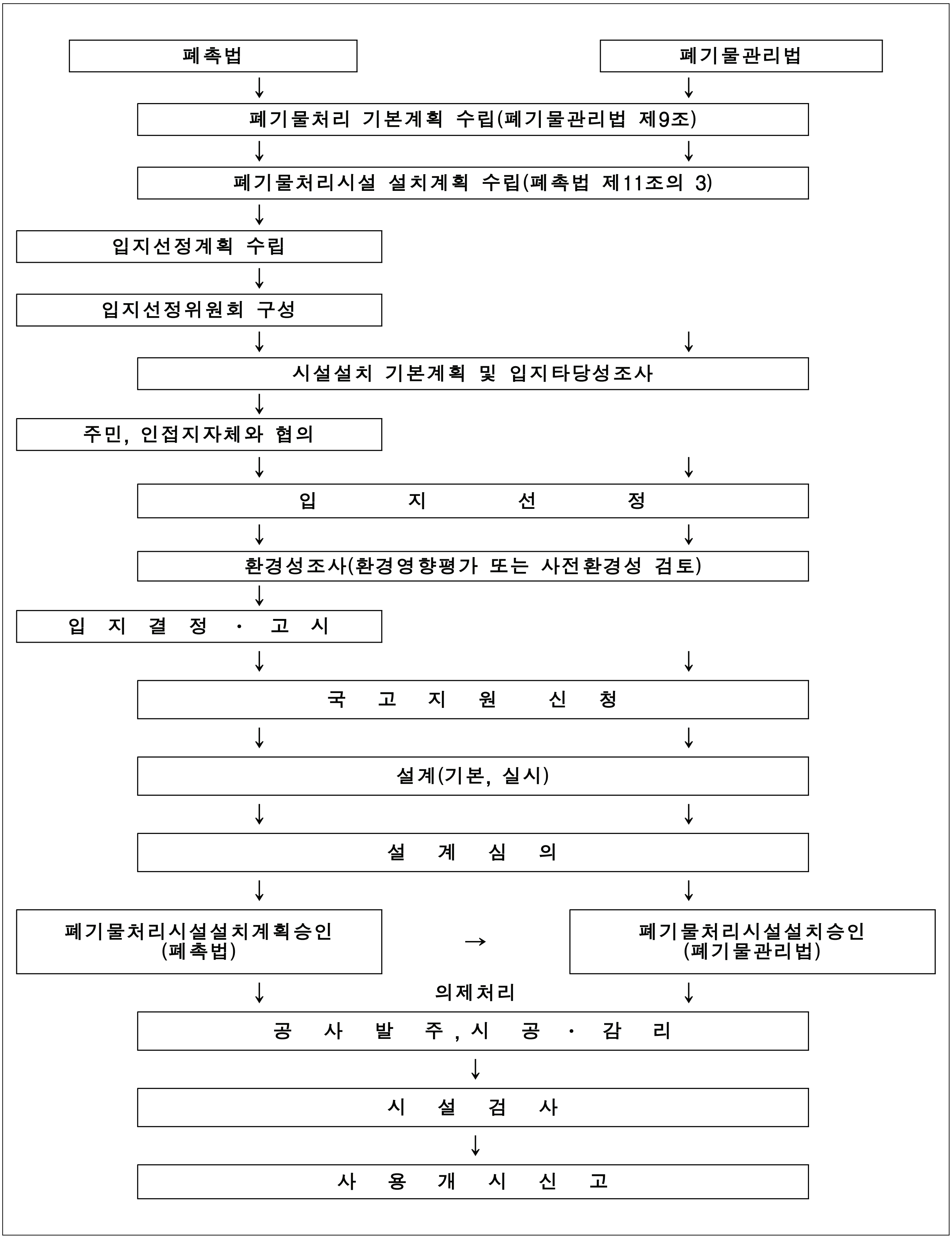

※ 본 흐름도는 통상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를 도시한 것으로서, 입찰방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7>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절차

바이오가스화시설, 목재연료 제조시설 등 (폐기물관리법 적용)

절차	비고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 및 사업시행	◦자치단체→주무관청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	◦자치단체 (전문용역기관)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해당관청(유역청, 재난방재과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개최)	◦교통성검토서, 농지전용협의서, 산지전용협의서 작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실시설계 완료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자치단체→시도지사
공사 착공 / 준공	◦시운전기간 포함
정상 가동	

발전시설

절차	비고
준비단계 및 기초자료 검토	◦전력수급 및 전력시장 추이 분석
발전사업 허가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한전)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한국전력거래소) ◦3,000KW 이하–시도지사 ◦3,000KW 이상– 지식경제부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해당시),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검토	◦의제 인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산지전용허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초지전용허가 ※ 형질변경 가능여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
발전사업 계획 신고 및 공사인가	◦지식경제부, 지자체
발전사업 관련사항 신고	◦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의(한국전력거래소)
발전사업 준공	
전기설비 공사 후 사용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개시 신고, 전력거래	◦발전차액지원 설치확인 (에너지관리공단)

<붙임 8> 태양광 발전을 위한 관련 절차

① 태양광발전 사업 절차(SPC 구성 이후)

단계	내용
법인/사업자 등록	① 상호 : SPC 명칭 ② 출자자 : 주요 주주 ③ 대표자 : 마을대표자
공유재산사용 허가신청	④ 지자체 소유 건축물 사용 허가 확보
시공업체선정	⑤ 설계도 준비 ⑥ 기자재 내역서 준비
발전사업 허가	⑦ 광역자치단체의 사업허가 획득
한국전력 계통	⑧ 한국전력 계통 연결 신청
공사 착공 준공 및 사업개시	⑨ 공사착공 : 공작물 축조/건축 신고 ⑩ 준공 및 사업 개시

② 발전사업자 RPS제도 참여 절차

발전사업허가	➡	판매사업자 선정	➡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3MW이하 : 지자체 · 3MW : 산업부 전기위원회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	발전사업 개시	➡	RPS대상설비 확인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전력거래소 * 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		·신재생에너지 센터신고 *사용전검사일 후 1개월 이내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③ 태양광 발전사업 금융지원 절차

□ 추천절차

①사업계획공고 (산업부/센터) ⇨ ②자금온라인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③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 ⇨ ④추천서발급 (센터 → 자금신청자)

⇨ ⑤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⑥최초인출 (은행⇄자금신청자) ⇨ ⑦완공 및 인출완료 (은행 ⇄자금신청자) ⇨ ⑧사후관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⑨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지원조건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자금용도</th><th>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th><th>대출기간</th><th>이자율</th><th>지원비율</th></tr>
<tr><td rowspan="4">전력기금</td><td colspan="2">생산 자금 및 시설자금</td><td>100억원 이내</td><td>5년거치 10년 분할상환</td><td rowspan="4">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td><td rowspan="4">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이내</td></tr>
<tr><td rowspan="2"></td><td>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td><td>100억원 이내</td><td rowspan="2">3년거치 5년 분할상환</td></tr>
<tr><td>주택용 설비</td><td>1억원 이내</td></tr>
<tr><td colspan="2">운 전 자 금</td><td>10억원 이내</td><td>1년거치 2년 분할상환</td></tr>
</table>

주1)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자금용도별 지원한도액 등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주3) 주택용 설비중 대여설비의 경우 설비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동일사업자(대여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50억원이내이며, 동일설치사업장(주택)당 지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함

주4)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은 중소기업에 준하여 지원함

④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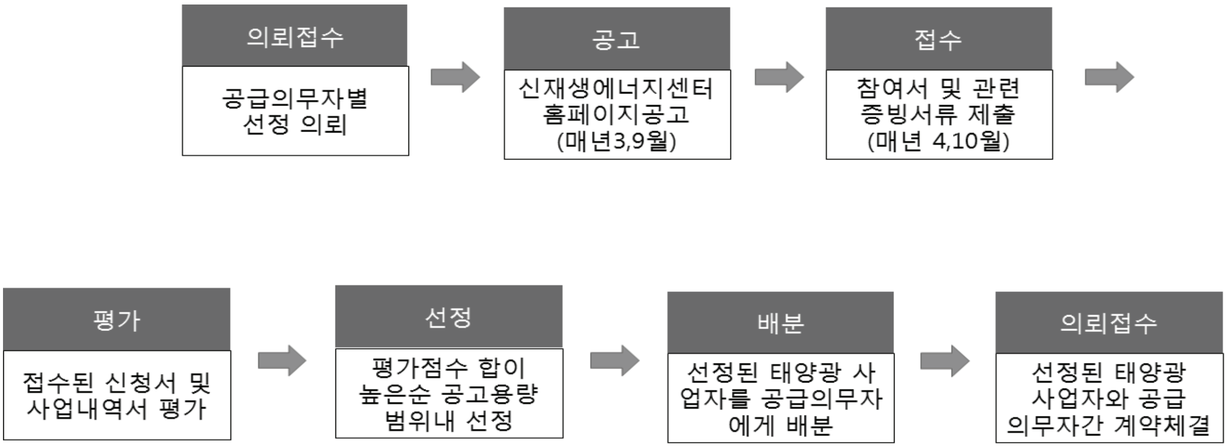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취득.

·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설비.

· 신재생에너지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 총괄관리기관에서 발급한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RPS시범사업(RPA) 또는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참여제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판매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판매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70
사업내역서 평가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30
합계			100

<붙임 9> 신규 도시가스 배관공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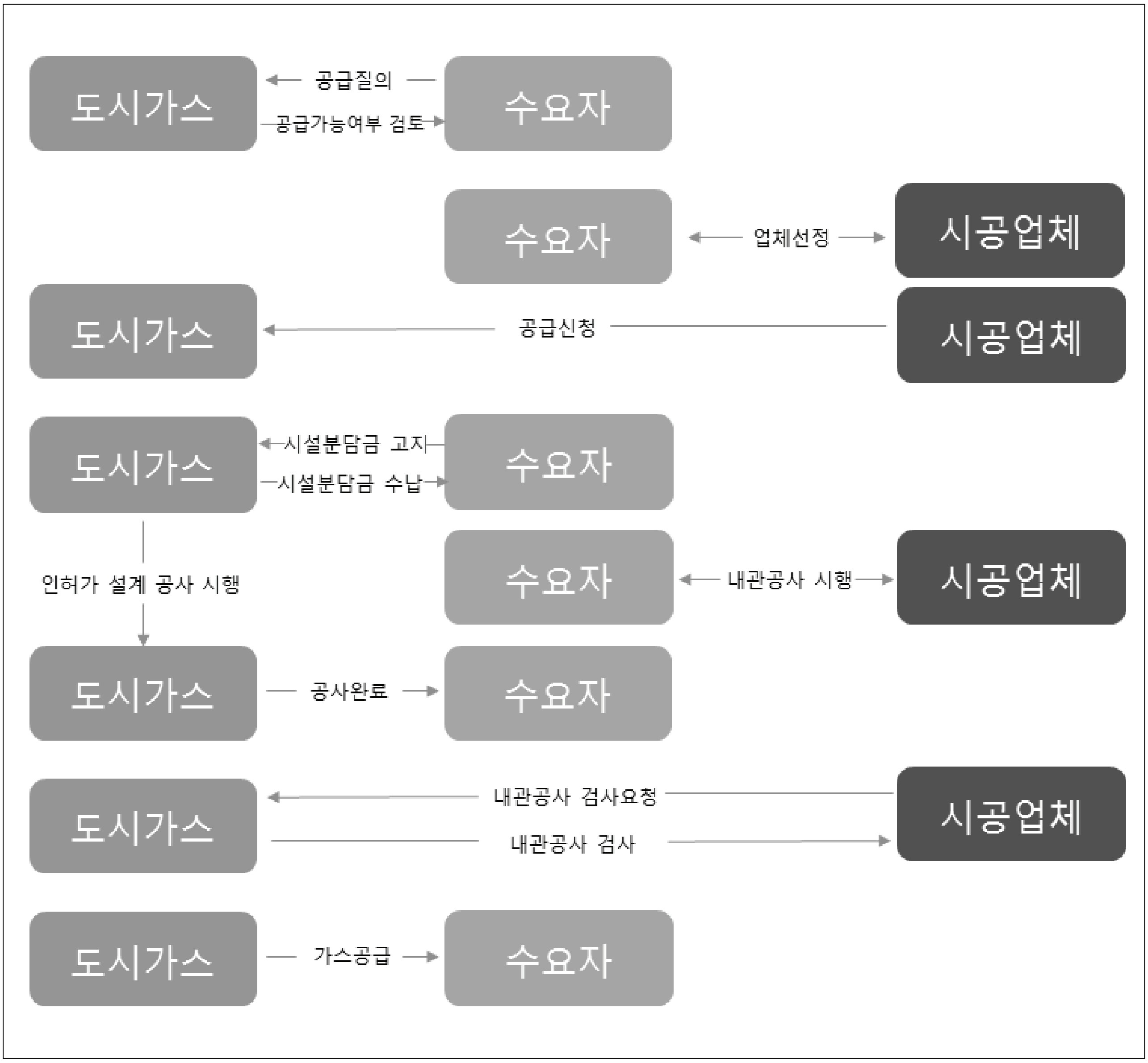

<붙임 10>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관련 절차

① SPC 설립 절차

단계	세부 절차
법인설립 준비	① 발기인 구성 ② 상호검색 및 결정 ③ 정관작성 및 인증 ④ 주식발행사항 결정 및 발기인 주식(총수)인수 ⑤ 주식배정과 인수 ⑥ 주금납입 및 보관증명서 발급(발기인 대표 명의)
창립총회/임원선임	⑦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⑧ 이사회(임원선임) ⑨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인증	⑩ 법인인감도장 마련 ⑪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인증
등기	⑫ 법인등록세 납부 ⑬ 법인등기 신청 ⑭ 등기로 법인격 취득
사업자등록	⑮ 사업자등록증 발급 ⑯ 법인통장 개설 및 4대 사회보험 신고 ⑰ 노동사무소 신고

② SPC 구성 및 시공절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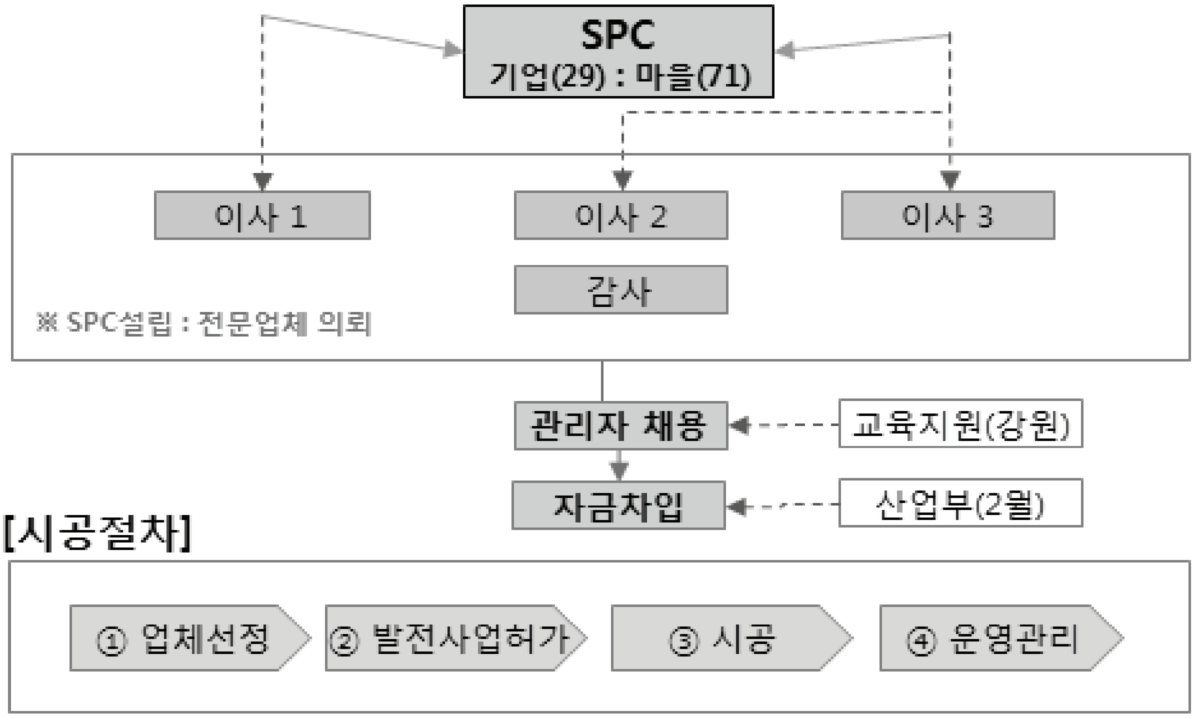

③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SPC 정관(사례)

정　　관

2015. 03.　제정

홍천 친환경태양광에너지 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회사명

이 회사는 “홍천 친환경태양광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ongcheon Eco-friendly Solar Energy Co., Ltd." 라 표기한다.

제 2 조 사업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태양광발전소(이하 “본 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이하 “본 사업”)
(2) 본 사업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업체로부터 부여되는 본 시설의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3)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 판매를 포함한 전력사업 및 관련 설비 사업
(4) 신재생에너지 사업
(5) 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사업
(6) 위 각 호의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및 부수되는 업무
(7) 기타 회사의 업무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회사의 본점은 강원도 홍천군에 둔다.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외에 지점 등을 설립,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

회사의 공고는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국문일간지인 강원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사채

제 5 조 수권주식과 액면금액

(1) 회사가 발행하도록 수권된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서, 1주의 액면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2)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다.

제 6 조 주식과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7종으로 한다.

제 7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방법, 기타 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신주인수권자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2.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신주 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마케팅,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당해 주식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제 8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명의개서 등

(1)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0 조 명의개서대리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 또는 사채와 관련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사업장소는 공고하며,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있는 경우)에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등록의 기재를 포함한 주식 및 사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회사가 수권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 11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정지한다.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 12 조 주주총회의 소집

(1)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되며, 임시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주주총회 소집통보는 대표이사가 회의일보다 적어도 2주간 전에 회의일자,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위의 통지기간은 그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동의를 얻어 단축될 수 있다.

(3) 주주총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강원도의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 13 조 주주총회의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제 1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 의결권의 행사

(1) 각 주주는 소유한 주식 1주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주주총회의 결의

법령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이루어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또는 변경
2.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3. 회사의 합병, 조직변경,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제 17 조 주주총회 의사록

각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의사 경과요령 및 채택된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 감사

제 18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명으로 한다.
(2)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제 19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회사는 이사선임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며, 주주는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감사 선임 시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0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상법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수를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충원한다.

제 21 조 대표이사

(1) 이사회는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 1인 또는 그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초대 대표이사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다.

(2)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 조 감사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사업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23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규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의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 이사 또는 감사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 소집을 위하여,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자는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기재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의장

(1)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2)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 조 의결정족수 및 결의의 채택

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모든 의결은 관련법령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한다. 단 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를 초과하는 찬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제2호의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영업의 양수도 또는 제8호의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 및 처분 또는 제11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정관변경안의 결정, 회사의 내부규칙 및 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영업의 양수도, 조직변경안의 결정,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3. 신주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자본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확장 및 신규 투자에 관한 사항
5. 신규투자에 따른 별도법인 설립, 조직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조달 및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9. 차입, 보증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회사 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정관 및 법령상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 28 조 회의장소 및 결의방법

(1) 이사회는 회사의 본점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의사 경과요령과 채택된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를 주재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30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31 조 회계장부와 기록

회사의 회계장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 3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등

(1)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시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2) 회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34 조 이익배당

(1)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외의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3) 제1항의 이익배당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단,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주식의 소각

(1) 주식은 관련법령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 7 장 발 기 인

제 36 조 발기인

발기인의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인수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발기인(발기인대표): 소매곡리에너지타운 영농조합법인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길 75-9

법인등록번호: 145271-0004302

인수주식수 : 7,100주

발기인: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후평동) 163

법인등록번호: 140111-0002010

인수주식수 : 2,900주

위와 같이 홍천 친환경 태양광에너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15년　　월　　일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03월　　일부터 시행한다.

소매곡리에너지타운 영농조합법인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대표이사 ○ ○ ○

<붙임 11>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자치규약(예시)

소매곡리 에너지 타운 주민자치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약의 명칭을 "소매곡리 에너지 타운 자치규약"이라 칭한다. (이하 '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소매곡리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의 삶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소매곡리 에너지타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마을 사무소는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길 75-9에 둔다.

제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구분) 본 규약은 주민의 구분을 주민과 명예주민으로 한다.

① 마을주민은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을 포함한다.

② 명예주민은 마을주민이 아닌 자로 마을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마을이장의 추천으로 마을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 그 지역 향우회 회원은 마을 이장이 판단하여 명예주민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주민 자격) ① 주민 자격은 마을 내 주소지 이전 후 6개월 이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마을총회 취지에 동의하고,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준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새로운 주민이 입주하였을 경우 마을정기총회에서 자격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마을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② 마을총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만 18세 이상)

1.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2. 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3. 마을자치규약의 제,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4.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회의에 의견을 진술권리 및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5. 18세 미만은 원하는 경우 마을총회 참관 허용(의결권 없음)

③ 마을사업에 출자 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권리

④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권리

⑤ 마을 공동재산권의 권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 마을총회에서 의결 된 권리

제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마을규약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 마을 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방해 금지

③ 친환경농업 전환 노력

④ 검소한 생활, 환경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⑤ 외부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⑥ 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훼손시 배상책임) 및 무단사용 금지

⑦ 년 1회 마을운영관리비 납부 의무

⑧ 본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제3장 마을총회 및 임원구성

제8조(마을총회 구성)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매곡리마을 총회를 구성하며 마을 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① 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고, 이장은 모든 회의의 소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시총회는 마을주민 누구라도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의 판단 하에 이를 소집한다.
3. 마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매월 15일에 추진위원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마을총회에 보고한다.

② 마을총회는 주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마을총회의 임무) 본 총회는 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

② 임원선출

③ 마을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결정

④ 회원의 상, 벌 심의결정

⑤ 회원 상호간 상반되는 사안 조정

제10조(임원 종류와 정수) 회장은 마을총회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① 이장 1인

② 총무 1인

③ 노인회장 1인

④ 부녀회장 1인

⑤ 청년회장 1인

⑥ 감사 2인

⑦ 추진위원장 1인(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⑧ 기타 임원(경관관리위원장, 작목반장, 마을지킴이 대표 등)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이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는 이장이 지명하고, 노인회장은 노인회에서 선출하고,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선출하고, 청년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와 자문위원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이장 및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2년

② 총무 3년

③ 감사 3년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시 의장이 된다.

1. 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마을총회를 통괄한다.
2. 대외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 전달한다.
3.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무는 본 회의 재산계정 및 회계기록 유지하며 이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 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④ 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일 전반에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마을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제 4장 마을사업 참조)

⑤ 청년회장은 마을 지킴이 대표로서 환경감시, 재난재해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 회장은 분기별로 활동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마을 일이 있을 경우 총회 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⑧ 각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 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공개) 본 마을총회는 제반 의결사항 및 회원 건의사항,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마을회관 게시판에 2주일 이상 공고하고, 각 반장을 통해 전 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마을사업

제15조(추진위원회 구성) 마을발전에 있어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하 '위원'이라 칭한다.)

① 추진위원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 자문위원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추진위원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장은 마을이장이 겸임하거나,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새롭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 마을이장은 반드시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총무,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감사는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추진위원은 해당사업이 끝나면 마을의 생산조직(영농조합법인)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1. 재편된 마을의 생산조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주식회사로 발전시켜 나간다.

2. 생산조직은 농촌체험, 유기농/축산, 가공/유통/저장 3개 팀으로 구성한다.

제16조(추진위원 회의) ① 추진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1회, 임시회의는 회원1/4의 요구가 있거나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추진위원 회의 결과는 마을정기총회에서 공개한다.

제17조(추진위원 의결) 추진위원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참석회 위원 2/3 찬성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추진위원의 직무) 사업추진에 있어 추진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추진위원장은 전체 사업을 이끌어 간다. 사업 관련 마을행사가 있을 경우 흐름을 잘 체크하고 통솔한다. 위원장은 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만 관리한다. 추진위원장은 이장 활동비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추진업무,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한다. 단, 돌발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위원장에게 알리고 의견이 분분하여 급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되, 차후 총회에 상정하여 해결한다. 총무,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우 봉사수당을 마을총회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전체 진행일지나 사업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여 마을게시판에 게시한다.

1. 사업 초기에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체크하여 경제적 손해와 주민 간 오해가 없도록 한다.
2. 총무는 입출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득금의 분배 비율, 공동기금의 사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단, 정기회의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본 사업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는 마을역사 보존자료로서 운영위원회 해산, 청산 시 추진위원장 서명과 입회자(총무) 서명 후 총무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마을이장에게 인계토록 한다.

④ 부녀회장은 마을행사 및 방문객의 식사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먹거리 자원을 개발한다

⑤ 노인회장은 마을풍수/역사 해설가 등 전통체험을 담당한다.

⑥ 청년회장은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 가이드, 주차관리,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제19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 추진위원장은 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과 설계 시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마을발전계획 중간보고회 시점에서 설계팀을 정하고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계획을 이해하도록 한다.

③ 마을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의 개요
2. 마을의 현황과 과제
3. 마을 테마 선정
4. 단계별 발전전략수립
5.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6. 소득구조개선
7.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체험 활성화
8. 공간 및 시설물 계획
9. 주민정보화
10. 생태/경관계획
11. 지역활성화 거점조성
12. 단계별 투자계획

③ 도/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나, 상위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20조(마을사업의 시행) ① 마을사업은 출자 등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은 누구든지 출자할 수 있다.
2. 출자한 기금은 토지매입이나 초기 관리운영 등에 쓰인다.
3.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초기에 출자한 주민들의 이득금 배당률을 높게 한다.

② 마을은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특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사업
2.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화시설 수탁운영사업
3.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홍보 및 체험사업
4. 홍천강 수상레포츠센터 등 관광시설 수탁운영사업
5. 기타 마을회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③ 외부 지원사업이나 마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마을사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사업 범위는 개인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2. 위험부담이 적고, 공동체에도 유리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3. 첫 사업은 위험율이 높으므로 작은 규모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기술을 습득한 후 규모 늘리고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유치한다.

④ 마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자비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사업 초기에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비도 사업비로 책정한다.
2. 교육비와 선진지 견학도 투자비에 포함시킨다.
3. 설계비와 감리비도 투자비에 포함시킨다.
4. 부가가치세는 포함시키고, 주민노동력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 마을에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과 마을사업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시설물,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신축행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준수한다.

1. 시설물 조성을 최소화한다.
2. 기존건물을 최대한 이용한다.
3. 기능을 중복시킨다.
4. 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지를 통합한다.
5. 관리운영 방법을 생각한다.
6. 민감한 마을주민들의 심리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배치가 되도록 한다.
7. 각각의 시설물들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유리한 동선으로 연계한다.
8. 농림업활동에 유리하도록 한다.
9. 토지확보는 마을 자부담으로 하되, 토지를 임대하여 쓸 때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다. 토지사용 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지급하되 임대료는 추진위원장이 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보관한다.
10. 설계는 농촌관련 계획내용과 마을발전계획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11. 시공은 기술력이 있는 마을주민을 선정할 수 도 있으나, 가급적 마을외부 시공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주민은 인력제공을 통한 간접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수익금의 운영) ① 전체 사업 수익금 중 30%는 '사업추진위원회(사업추진법인 등)사업기금'으로,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50%는 주민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출자한 비율만큼 배당한다.

② 사업추진위원회 사업기금은 단기적으로는 추진위원장,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하나 장기적으로 사업추진 법인 대표와 법인총무가 관리한다.

③ 사업추진위원회 사업기금은 마을공동기금과 구분하여 조성하고, 사업시설관리, 인터넷관리, 홍보/마케팅, 소득사업을 위한 재투자를 위해 사용한다.

④ 마을공동기금은 마을 공동 공간 및 시설 관리비, 건강검진, 장학금, 난방비 지원 등으로 사용한다.

제22조(수익금 배당 자격상실) ① 마을주민이라 할지라도 마을총회 3번 이상의 회의 불참, 2번 이상의 마을 공동행사 불참의 경우 회장이 해당 주민에게 그 시정 권고를 하고 불 이행시 정기총회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단, 불참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때

③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규약을 지키지 않은 회원의 경우 회장이 해당 회원에게 그 시정 권고를 하고 불 이행시 정기총회시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제5장 경관관리

제23조(관리 범위) 경관관리는 경관, 생태, 재해부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경관관리의 범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된다.

1. 자연환경(100㎡ 이상의 산림벌채, 전답의 조성, 하천의 정비 행위)
2. 생산시설물(30㎡ 이상의 농임산물 재배사, 축사, 창고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3. 주거시설(30㎡ 이상의 주택, 부속사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행위)

② 생태관리의 대상은 산림, 하천, 농경지 등을 포함한다.

③ 재해관리의 범위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 산사태, 화재 등 인재, 천재지변에 의한 모든 재해가 해당한다.

제24조(관리 방법) ① 마을의 경계범위에서 제23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을 경관/환경/재해관리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 마을 지킴이를 발족하여 마을방범, 소방, 안전관리, 재난재해방지, 환경감시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마을 지킴이는 청년회가 중심이 되며, 청년회장이 대표가 된다.

제25조(경관/환경/재해관리 위원회) 경관/환경관리 위원회는 마을 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년회장, 부녀회장을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운영관리

제26조(기록보존) 마을이장은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의 공유) ①마을회관에 마을안내판과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마을정보 수발신 센터로 한다.

② 스피커를 자연부락마다 설치하여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마을회의나 비상소집 시 마을이장이 방송을 2차례 이상 실시하고, 각 반장들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④ 마을홈페이지에 사랑방을 두어 마을의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 회장 및 회원들의 외부 교육 후 교육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개략적인 내용을 회관게시판에 게시한다.

⑥ 마을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한달 이내에 사업 집행 결산내용을 마을회관에 게시한다.

⑦ 모든 마을사업은 평가회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과정의 장단점을 꼼꼼히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관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8조(공공시설의 관리) ①규약 제22조에 의거 마을 공동기금으로 마을공동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은 마을이장이 관리한다.

③ 마을사업 시설물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④ 마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공동창고, 농기구보관창고 등이 개인소유화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컴퓨터, 카메라 등은 인터넷을 관리할 사람이 관리하고 장비의 공유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제29조(마을방문객들의 행위규범) 마을방문객들은 마을의 고유한 전통과 미풍양속을 지키고 존중하며 마을주민과 폭넓은 문화교류에 힘쓴다.

① 1회용품 안 쓰기

② 마을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기

③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④ 마을대표의 동의 없이 11시 이후 고성방가하지 않기

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서리는 자제하기

⑥ 임산물의 지나친 남채를 삼가기

⑦ 마을의 주요 역사/문화/생태자원에 대한 교란행위 하지 않기

제30조(토지거래에 관한 규제) ① 마을 공동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외부인에게 토지를 팔 경우, 외부인이 마을주민자치규약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마을의 풍수적으로 중요한 산이나 마을숲 등은 외지인에 대한 토지 거래를 최소화시킨다.

제7장 회계(재무)

제31조(회계년도) 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비) 주민들은 1가구당 년 1만원의 회비를 매년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공동기금의 운영) ① 마을공동기금은 이장,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 마을공동기금은 마을사업 수익금의 일부, 회비, 찬조금(성금포함)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마을공공시설 중 주민복지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마을총회 운영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34조(결산) ① 마을총회의 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이때 마을 사업에 대한 실적 및 결산보고도 함께 한다.

②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익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규칙 등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붙임 12>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 조례(예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519

제안연월일 : 2015. 6. 30.
제 안 자 : 홍천군수

1. 제안이유

하수처리장이나 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지정을 원활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 적용범위 (안 제2~3조)
-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행정리
-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나.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주변지역 인구 및 소득 및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정도 고려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처 지원계획 결정

다. 지원사업 범위 (안 제5조)
-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지원
-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등 편익 증진사업

라. 지원재원의 조달 (안 제6조)
- 일반회계에서 조달

마.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제1항)
- 주변지역 범위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7조 제2항~4항)
- 심의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기획감사실장, 환경기초시설 주무부서장 및 해당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군의회 의원, 마을발전 협의체 대표,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위원으로 구성

3. 제정 조례안 : 붙임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15년 2회추경 일반회계에 편성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5. 04. 17. ~ 05. 11)결과 : 의견 반영
- 적용대상 환경기초시설 구체적으로 명시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평가 완료

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원안 가결

5) 비용추계서 : 별첨

6) 홍천군 조례 규칙 심의 : 원안가결

붙임 1 조례안

홍천군 조례 제 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 지정을 원활히 하고, 홍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 및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홍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환경기초시설 등 적용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명	주 소	비고
하수처리시설	홍천군 하수종말처리장	북방면 소매곡길 1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홍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북방면 소매곡리 159	
폐기물처리시설	홍천군 퇴액비 자원화 시설	북방면 소매곡리 182-1	

<붙임 13> 국내・외 우수사례

친환경에너지타운 국내·외 우수사례

1. 국외 우수사례

- (독일 윤데) 마을 인근의 **가축분뇨, 에너지 작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소득** 증대

※ 주민협동조합으로 생산된 전력과 열 일부를 판매하여 수익(연간 약 13억 6,000만 원) 창출

- (오스트리아 뮤레크) 에너지 작물 재배·활용을 통해 **바이오디젤·가스, 전력 등을 생산**하여 **자체소비 및 판매**

※ 정부보조금과 마을 농부들이 모은 자금으로 바이오디젤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지역 난방회사 및 바이오가스회사를 설립하여 에너지 및 경제 자립 달성

- (덴마크 삼소섬) **전력수요**의 대부분을 **풍력발전으로 충당**, **난방에너지**는 **태양열, 바이오매스, 열펌프** 등으로 공급

※ 에너지 발전 설비의 대부분은 개인소유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하여 주주들에게 주당 약 95,000원 배당금 지급('08년 기준)

- (영국 베드제드) 주택 **지붕 태양광 설치** 및 단지 내 **열병합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활용**하고, **빗물과 오수**를 **재활용**

※ 정부가 오수처리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 본 모델을 바탕으로 영국 전역 확산 및 해외 수출 상품화

-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폐기물 처리** 시 **생산**되는 **전력은 자체 소비**하고, **발생**되는 **여열은 지역난방으로 주민에게 공급**

※ 세계적 환경건축가인 훈데르트바써(Friedensreich Hunderywasser)가 리모델링 설계에 참여,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장소로 승화하여 비엔나 관광지로 부상

- (일본 마이시마) **슈피텔라우 소각장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광객 유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화려한 외관과 동굴 같은 실내에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슈피텔라우 소각장을 설계한 훈데르트바써가 소각장 설계에 참여)

1 독일 윤데(Juhnde)

◈ 개요

○ 위치: 독일 니더작센 주 괴팅엔시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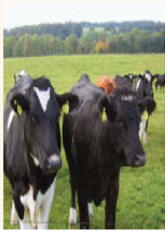
○ 면적: (농지) 13km^2, (산림지) 8km^2	
○ 인구: 약 750명(약 200세대)	
○ 특징 - 지역(괴팅엔) 대학의 제안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 주민협동조합으로 생산된 전력과 열의 일부 판매하여 수익 창출(약 13억 6,000만 원/년)	

◈ 주요 내용

바이오 에너지	○ 농경지와 산지로부터 충분한 양의 바이오매스(건초, 가축분뇨 등) 연료 확보 가능 ○ 건초, 가축분뇨 등의 메탄을 원료로 열병합발전소(5,000MWh/년) 건설 - 열병합발전과 목질보일러를 통해 생산된 전력과 열(온수)을 지역 주민의 70%에 공급
협동조합	○ 바이오에너지마을 추진위원회를 결성 - 협동조합 방식(주민의 70% 가입), 조합원 참여 및 출자 의무화 - 마을 에너지시설 공사비의 58%(330만 유로)를 지역에서 충당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비즈니스모델

바이오매스 판매 수익 (건초, 가축분뇨 등) ⇒ 메탄가스 활용 전력·열 판매 수익 ⇒ 발전부산물 유기비료화, 농업소득 증대

2 오스트리아 뮤레크(Mureck)

◈ 개요

○ 위치: 오스트리아 동남쪽 끝 슬로바니아 국경 인근	
○ 면적: 5.0km^2	
○ 인구: 약 1,700명	
○ 특징 - 지리적(슬로베니아 국경 인접) 불안요소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자립의 필요성으로 자발적 사업 추진 - 주민주도를 기반으로 인근대학(그라츠), 정부, 컨설팅 업체의 협력관계 구축, 에너지 자립도 170% 달성	

◈ 주요 내용

○ 정부보조금과 마을 농부들이 모은 자금으로 바이오디젤회사 SEEG를 설립

- 설립 시, 인근 그라츠 대학과 컨설팅 업체(바이오디젤인터내셔널)의 지원

○ 바이오디젤회사의 성공으로 지역난방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바이오가스회사까지 설립하는 등 마을 에너지 및 경제 자립 달성

< 뮤레크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업 사업현황 >

구분	SEEG('89) (바이오디젤 생산회사)	나베르메('98) (지역난방회사)	외코스트롬('03) (바이오가스회사)
운영	570명의 주민 투자 (정부 30% 지원)	SEEG+2명의 농부 투자	나베르메+7명의 농부 투자
원료	10%유채유+90%폐식용유	나무(Wood chip)	가축 분뇨와 농업 부산물
연생산량	1,000만ℓ	8,500MWh	8,400MWh
용도	뮤레크지역 자동차 연료 공급 및 타 지역 판매	뮤레크지역 난방 85% 공급	뮤레크지역 전력 100% 공급

◈ 비즈니스모델

○ SEEG는 연간 1,000만ℓ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지역 자체소비(판매) 후 인근 그라츠 시내버스 152대 연료로 사용, 연매출 1,000만 유로('11년) 달성

○ 외코스트롬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전력을 생산하여 오스트리아 전력공사에 판매

3 덴마크 삼소섬(Samso Island)

◈ 개요

○ 위치: 덴마크 중부 카테가트 해협	
○ 면적: 114km^2	
○ 인구: 약 3,800명	
○ 특징 - '97년 덴마크 정부 개최 신재생에너지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을 기점으로 사업 추진 - 저소득, 저학력, 고령의 농부들이 대부분인 섬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	

◈ 주요 내용

신재생 에너지	○ 육상 풍력발기 11기, 해상 풍력발전기 10기, 밀짚연소 난방시설 3기, 태양열·우드칩보일러 1기 등 - 섬 내부 전력수요의 10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 난방에너지의 70%는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 30%는 열펌프 등으로 공급
삼소 에너지 아카데미	○ 신재생에너지 연구, 교육, 홍보 전시 등을 목적으로 생태건축공법을 적용하여 건립('06년) - 신재생에너지 체험 및 교육, 관광 명소로 부각

◈ 비즈니스모델

○ 개인소유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주주들에게 주당 약 95,000원 배당금 지급('08년 기준))

○ 주민들은 지역난방의 주원료인 밀짚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유채씨를 활용하여 바이오디젤 생산 후 자체소비 및 판매

○ 연간 방문객(약 50만 명)으로 인한 부가적 수입 증가

4 영국 베드제드(BedZED)

◈ 개요

○ 위치: 영국 런던 근교 서튼 자치구 베딩턴	
○ 면적: 1,405m^2	
○ 인구: 약 100세대	
○ 특징 - 런던 남부 웰링턴 오수처리부지에 주택협회, 환경컨설팅 회사, 건축가 빌 던스터가 친환경·에너지효율 주택단지 조성 ※ 정부가 오수처리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여 사업 추진('00～'02년)이 가능	

◈ 주요 내용

제로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모든 주택 지붕에 태양광패널 설치, 단지 내 열병합 발전으로 에너지 생산 및 활용 ○ (에너지 효율) 실내 온도와 내부건물 온도를 외부 바람 이용이 가능한 굴뚝을 통하여 조절, 주거 공간 남쪽 배치, 3중 유리 설치 ○ (절수 및 재활용) 빗물과 오수의 정화수는 절수화장실과 옥상정원 관리에 활용, 건축자재의 15% 재활용 또는 재생 자원으로 충당
자원절감 효과	<항목별 감축목표 및 효과> (표 아래 참조)

<항목별 감축목표 및 효과>

항목	감축목표	감축효과('07년 기준)
실내난방	90%	88%
온수	33%	57%
전력	33%	25%
수도	33%	50%
개인차량운행	50%	65%

◈ 비즈니스모델

○ 타운 조성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영국 전역 확산 및 해외 수출 상품화

※ 친환경주택 10만호 건설 계획 발표('07년), 엑스포(상해) 부스 설치 등 세일즈 강화

5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Spittelau Waste Incineration Plant)

◈ 개요

○ 위치: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 중심

○ 규모: (굴뚝높이) 126m, (소각용량) 25만T/year

○ 인구: (비엔나) 177만 명

○ 특징

- 도시 고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지역난방으로 여열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소각장을 리모델링하여 건축
-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인근 60,000여 세대에 급탕을 공급하여 난방비 절감(비엔나시 아파트 37%에 열 공급)

◈ 주요 내용

관광자원	○ '87년 대형화재 후 '91년 신기술 및 건축예술가의 설계를 적용하여 리모델링 실시 - 비엔나 환경건축가인 훈데르트바써가 리모델링 설계에 참여 - 기피·혐오시설이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장소로 전환되었으며 비엔나 관광지로 부상
난방무상 공급	○ 연간 25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60MWh의 소각열(지역난방 공급) 및 전력을 생산 ○ 생산된 전력은 소각시설에 활용되고 인근 60,000여 세대에는 급탕 공급 - 이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급탕을 공급받는 아파트의 난방비가 절감되었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옴

◈ 비즈니스모델

○ 기피·혐오시설을 시민 친화시설로 전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폐기물 처리 시 생산되는 전력은 자체 소비하고, 발생되는 여열은 지역난방으로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주변 주택가격 상승)

6 일본 마이시마 소각장(Maishima Waste Incineration Plant)

◈ 개요

○ 위치: 일본 오사카 해안 부둣가 공장지대

○ 규모: (면적) 33,000m^2, (굴뚝높이) 120m, (소각용량) 32만 T/year

○ 인구: (오사카) 269만 명

○ 특징

-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오사카 지역의 명소로 조성
- 연간 10,000명 이상의 초등학생 견학 및 별도의 견학안내 요금을 통해 수익 창출

◈ 주요 내용

관광자원	○ 슈피텔라우 소각장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명소로 조성 - 오사카의 새로운 소각장 건설에 오스트리아 사례를 적극 도입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설계한 훈데르트바써가 소각장 설계에 참여) - 화려한 외관, 동굴 같은 실내,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 견학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방문
친환경 기술적용	○ 연간 32만 톤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적 측면 고려 - 쓰레기 수송효율화와 환경 배려로 일본 최초로 대형 CNG 차량 도입 - 빗물을 저장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배수 처리된 폐수의 재활용을 통해 1일 400톤의 물을 절약 - 다이옥신 문제도 컴퓨터에 의한 안정된 고온운전과 백필터(Back filter) 방식, 촉매탈취장치 등 3중 차단을 거쳐 배기가스 0.1ng 이하로 유지

◈ 비즈니스모델

○ 관광객 유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쓰레기로부터 생산된 잉여 전력 및 텍스타일과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 판매로 연간 약 182억 원의 수익 창출

2. 국내 우수사례

- (전북 부안군) 시민이 주주인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발생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수익금을 출자자들에게 배분

※ 마을 에너지시설을 활용, '햇빛과 바람의 학교'를 운영 중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 기후변화 문제, 지역에너지 등 교육

- (제주 화순리) **주민피해 보상금**으로 **마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나온 **수익**을 **공동**으로 **활용**

※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발전차액과 한전 판매금 등을 합하여 '08.5월∼'09년 말까지 약 33만kWh 생산, 2억 2,400만 원 수익 달성

- (구리 소각장) **소각 연돌을 전망대, 레스토랑으로 활용**, **소각열**을 **수영장** 등 **주민편의 시설**에 활용, **랜드마크화**

※ 입지선정 및 시설 구축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장려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 최소화

- (수도권 매립지) 매립장 및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골프장, 주민체육공원, 환경박람회장, 습지관찰지구, 동물농장** 등 **구축**

※ 단지 내 골프장 운영을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운영, 매립가스 발전시설 (50MW) 전력생산을 통해 연간 177억 원의 전력 판매 수익

- (광명 자원회수시설) 인근 가학광산 **동굴 개발과 연계**, 단순한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광명 **에코테마파크의 거점으로 활용**

※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회수하여 지역난방 열원으로 판매하며, 전국 최초의 환경기초시설 빅딜로 구로구와 공동 사용 중

1 전북 부안군

◈ 개요

○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등용마을	
○ 면적: -	
○ 인구: 약 50명(30세대)	
○ 특징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반대 비판논리에 탈 원전을 고민, 시민단체 주도 에너지 자립 실현 추진 * '05~'15년 까지 마을 총 에너지의 50%를 자력으로 충당하는 프로젝트 수립	

◈ 주요 내용

재생 에너지 발전소	○ '05~'06년까지 부안지역 생태학교 및 종교시설에 3kW급 햇빛발전소 1·2·3·4호기 설치, '08년 3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교육관 지붕에 설치 ○ 35RT급 지열 시스템 설치하여 교육관과 주택 난방에 활용('06년), 태양열 난방 시설 설치('08년), 태양열 온수기 설치
재생 에너지 체험교육	○ 마을 에너지시설을 활용, '햇빛과 바람의 학교*'를 운영 중 *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 기후변화 문제, 지역에너지 등 교육 - 체험 교육, 견학, 관광 등을 목적으로 연간 약 3,000명('10년 기준) 방문

◈ 비즈니스모델

○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출자자들에게 배분

2 제주 화순리

◈ 개요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 면적: 9,900m^2	
○ 인구: 약 3,000명	
○ 특징 - 주민피해보상금 활용 방안 논의 중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접하고 태양광발전의 수익원 가능성에 주목하여 시작	

◈ 주요 내용

태양광 발전	○ 주민피해보상금 약 17억 원을 마을 공동소득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소 (185kW급 2기)를 설립
주민참여 주식회사	○ (사)화순리마을회를 설립하고, 마을회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주)번내태양광발전을 출범(대표 및 이사직을 이장과 주민들로 구성) - 마을 청년회에서 태양전지판 관리, 수익금은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

◈ 비즈니스모델

○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 및 에너지관리공단 발전차액 등을 합하여 1kWh 당 약 600원 수입

※ ’08.5월～’09년 말까지 약 33만kWh 생산, 2억 2,400만 원 수익 달성

3 구리 소각장

◈ 개요

○ 위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원	
○ 면적: 68,466m^2	
○ 인구: 약 20만 명	
○ 특징 - 입지선정 및 시설 구축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장려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 최소화 - 소각 연돌을 전망대 및 레스토랑으로 활용하고 소각열을 수영장 등 주민편의 시설에 활용(지역 랜드마크화)	

◈ 주요 내용

에너지 재생	○ (소각) 연간 51,162Gcal(4억 5,000만 원) 전기발전과, 39,342Gcal(3억 5,000만 원) 스팀을 공급 ○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장 소각열 연간 5,098Gcal(4,500만 원), 소화조 메탄가스 활용 열 공급 연간 2,000Gcal(1,800만 원) 생성
갈등극복	○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유치 반대를 미리 예측하고, 입지선정 및 시설계획 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 - 「시민공개협의체」를 구성하여 소각장 운영 및 자원 재활용 등에 대한 대화 및 협의 진행

◈ 비즈니스모델

○ 소각장 연돌 상단 타워 2층에 입주한 레스토랑 임대비(5,000만 원/년)
- 100m 높이의 타워가 지역의 랜드마크화 되어 일반 관광객 증가

○ 소각장 여열 활용 전력생산의 일부를 한전에 판매(5,000만 원/년)
- 여열 활용 수영장 및 사우나, 풋살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을 운영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

4 수도권 매립지

◈ 개요

○ 위치: 인천시 서구 백석동	
○ 면적: 1,989m^2	
○ 인구: 약 17,000명	
○ 특징 - 세계 최대의 매립부지로 총 4단계('04~'23년) 환경 에너지 단지 구축 계획 중 3단계('14~'18년) 사업 시행중 - 주민협의체 및 지원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편익시설로 식물원, 체육시설, 자연탐방단지가 구축	

◈ 주요 내용

드림파크	○ 제1매립장(404만m^2, '00년 매립종료) 부지에 골프장 및 주민체육공원(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산책로 등), 환경박람회장 구축 ○ 연탄재 등이 매립돼 있던 부지는 「녹색바이오단지」로 개발하여 승마장, 수영장, 야생초학습, 습지관찰지구, 동물농장 등으로 활용
주민지원 기금	○ (주민지원기금) 반입수수료의 10%로 조성되며, 기 적립된 기금을 활용 주민들을 위한 복지재단인 「미래복지재단*」 설립 * 노인요양, 영유아보육, 청소년도서관, 여성인력개발 등을 위한 시설

< 주민지원 기금 현황 >

(단위: 백만 원)

연도	'07	'08	'09	'10	'11	'12
계	11,405	11,128	10,927	11,706	10,681	14,725

◈ 비즈니스모델

○ 매립가스 발전시설(50MW) 전력생산을 통해 연간 177억 원의 전력 판매 수익

○ 드림파크 내 시설 활용하여 '14년 인천 아시아게임 중 골프, 수영, 승마 경기 개최

○ 단지 내 골프장 운영을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공동운영

5 광명 자원회수시설

◈ 개요

<table>
<tr><td>ㅇ 위치: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27번지</td><td rowspan="4"> </td></tr>
<tr><td>ㅇ 면적: 65,939m^2</td></tr>
<tr><td>ㅇ 인구: 약 35만 4,000명</td></tr>
<tr><td>ㅇ 특징
-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 열을 회수하여 지역난방 열원으로 판매
-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단순한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인근 가학광산 동굴 개발과 연계하여 광명 에코테마파크의 거점 역할 담당</td></tr>
</table>

◈ 주요 내용

자원회수 시설	ㅇ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 열을 회수하여 지역난방 열원으로 판매하며, 전국 최초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정책을 통해 구로구에서 발생된 쓰레기(150톤/일)를 함께 처리 ㅇ 소각 시 발생되는 유해성분은 최신의 설비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견학과 홍보자료를 통해서 환경친화시설임을 소개
관광자원	ㅇ '14.6월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기억에 남는 건물이 되도록 디자인 ※ 열정의 빨간색과 상상 속의 흰 구름으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 시민과 함께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 ㅇ 향후 인근 가학광산 동굴 개발과 연계를 통해 단순한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광명 에코테마파크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

◈ 비즈니스모델

ㅇ 폐열을 회수하여 지역난방 열원으로 판매
ㅇ 인근 가학광산 동굴 관광객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여 관광시설 활성화유도